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년 11월 13일

나. 발 의 자: 박미영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19.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5조~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안 제7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정옥)

- 본 건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 안 제4조 ~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되며, 우리구에는 2019년 11월 기준 총 14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6,25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로 바라보는 등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고 현실적 처우도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
----------	-----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일

발의자 : 박미영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소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 등(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안 제7조)
- 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19. 11. 15. ~ 11. 19.)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

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